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**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**

#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청렴韓세상

국민권익위원회

# 발표순서

1. 청탁금지법 제정배경
2. 청탁금지법 제정의의
3. 청탁금지법 주요내용
   - 부정청탁의 금지
   - 금품등 수수 금지
   - 위반행위 신고·처리
   - 신고자 보호·보상

청렴韓세상

국민권익위원회

#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2

##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

공직자의 부패·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
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

'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

**일반국민**의 부패인식 수준
"공직사회는 부패하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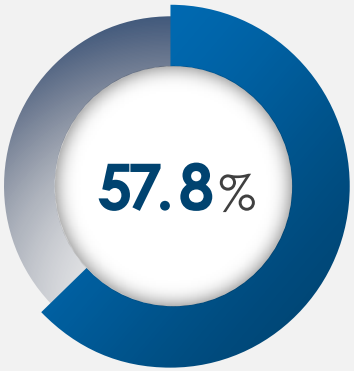

#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

**일반국민**의 부패인식 수준
"공직사회는 부패하다"

**공무원**의 부패인식 수준
"공직사회는 부패하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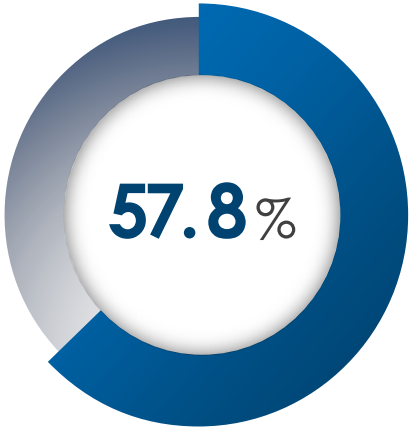


'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

'인식의 차이'
54.4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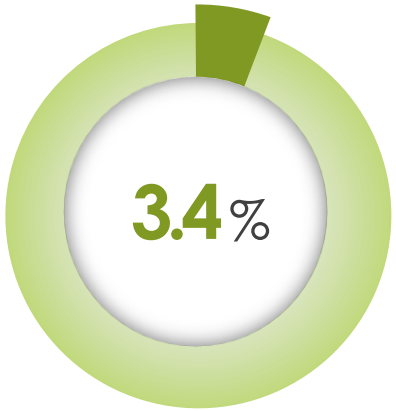


'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

**일반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의 차이가 시사하는 점**

- ▶ **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**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
- ▶ 국민들의 시각에서 '부패'를 공직자들은 **관행으로 여겨** 문제의식을 갖지 못함

#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2

## 답보상태인 한국의 청렴수준 향상

**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(CPI) 순위**

※출처 : 국제 투명성 기구(TI, '16.1월)

| | | |
|---|---|---|
| 1위 | 덴마크 | 91 점 |
| 2위 | 핀란드 | 90 점 |
| 3위 | 스웨덴 | 89 점 |
| ⋮ | | |
| 8위 | 싱가포르 | 85 점 |
| ⋮ | | |
| 18위 | 홍콩 | 75 점 |
| 30위 | 대만 | 62 점 |
| ⋮ | | |
| 37위 | 한국 | 56 점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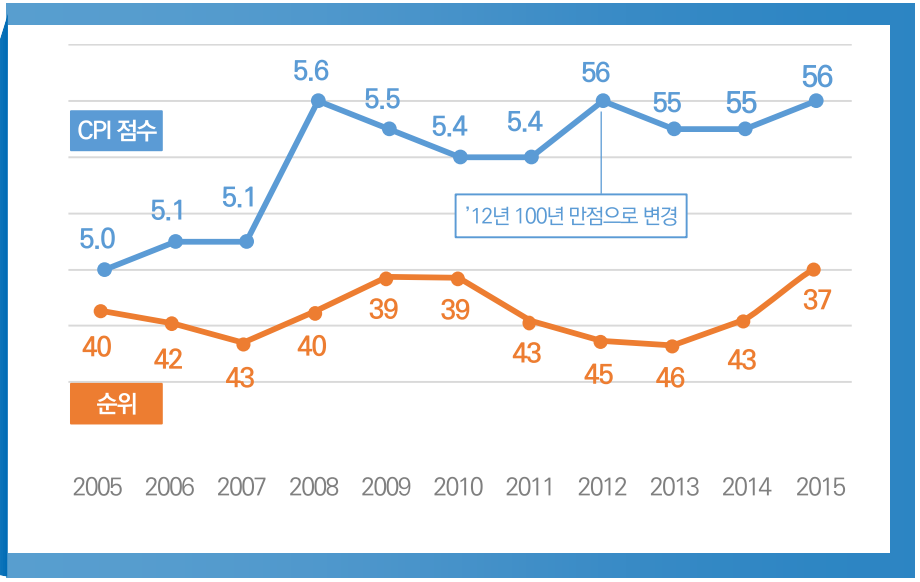

#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

## 국가경쟁력에 비해 **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**

**2015 국가 경쟁력 지수 순위**

※ 출처 : 세계경제포럼(WEF, '15.9월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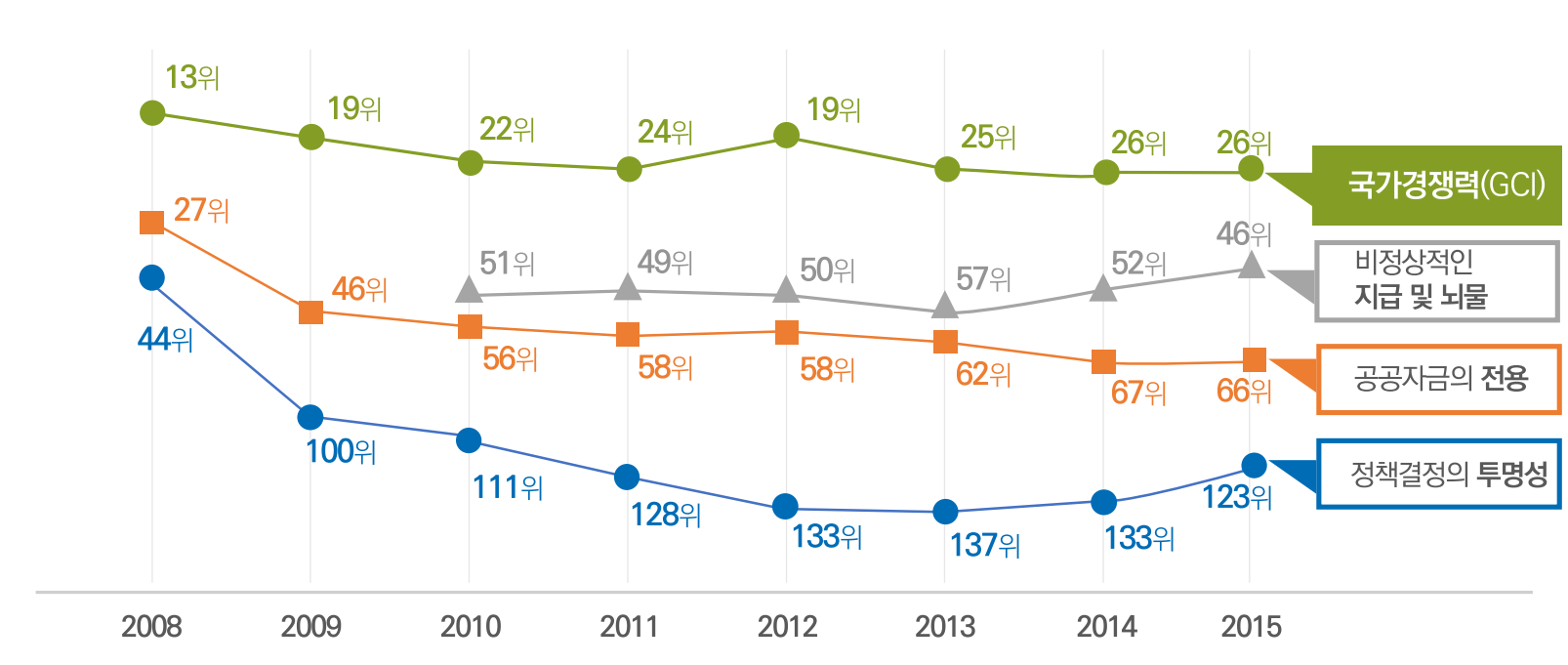

#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

## 민간부문도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

**2016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** ※ 출처 : 국제경영개발대학원( IMD, '16.5월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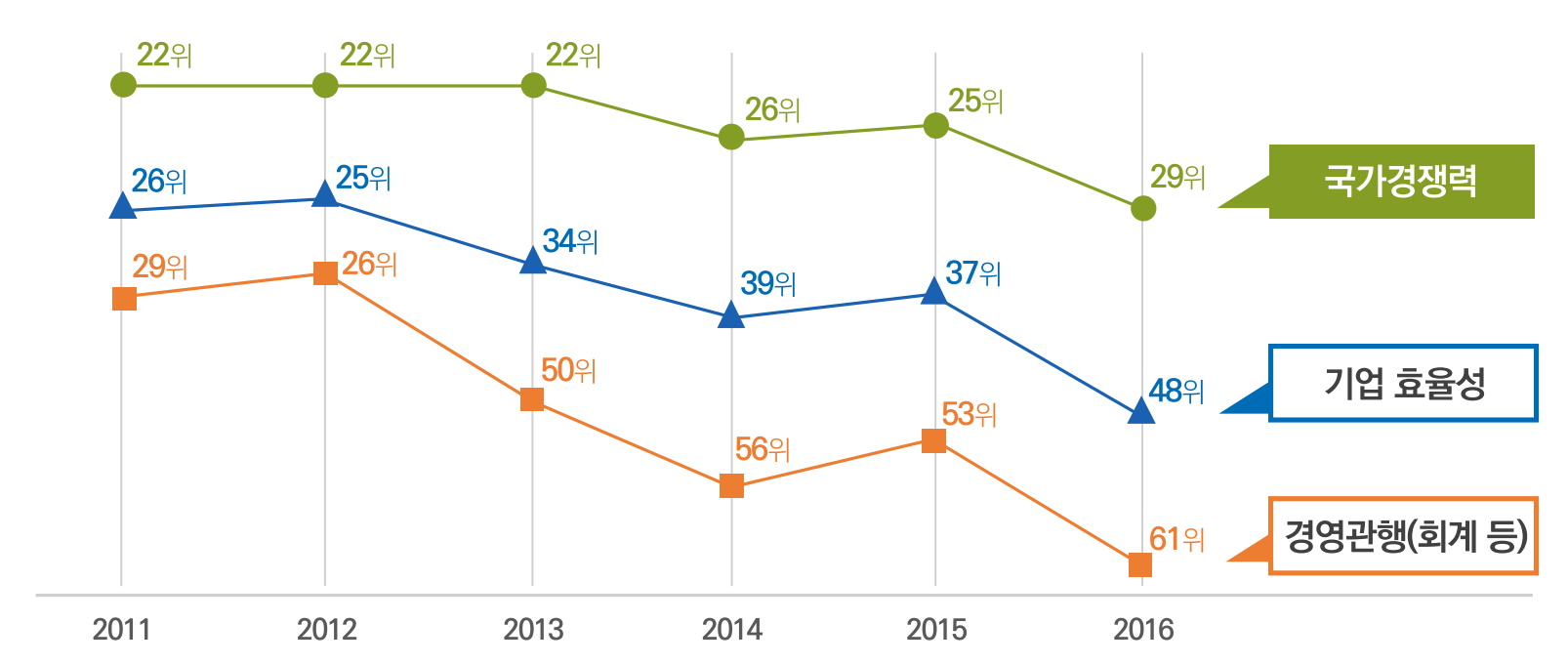

#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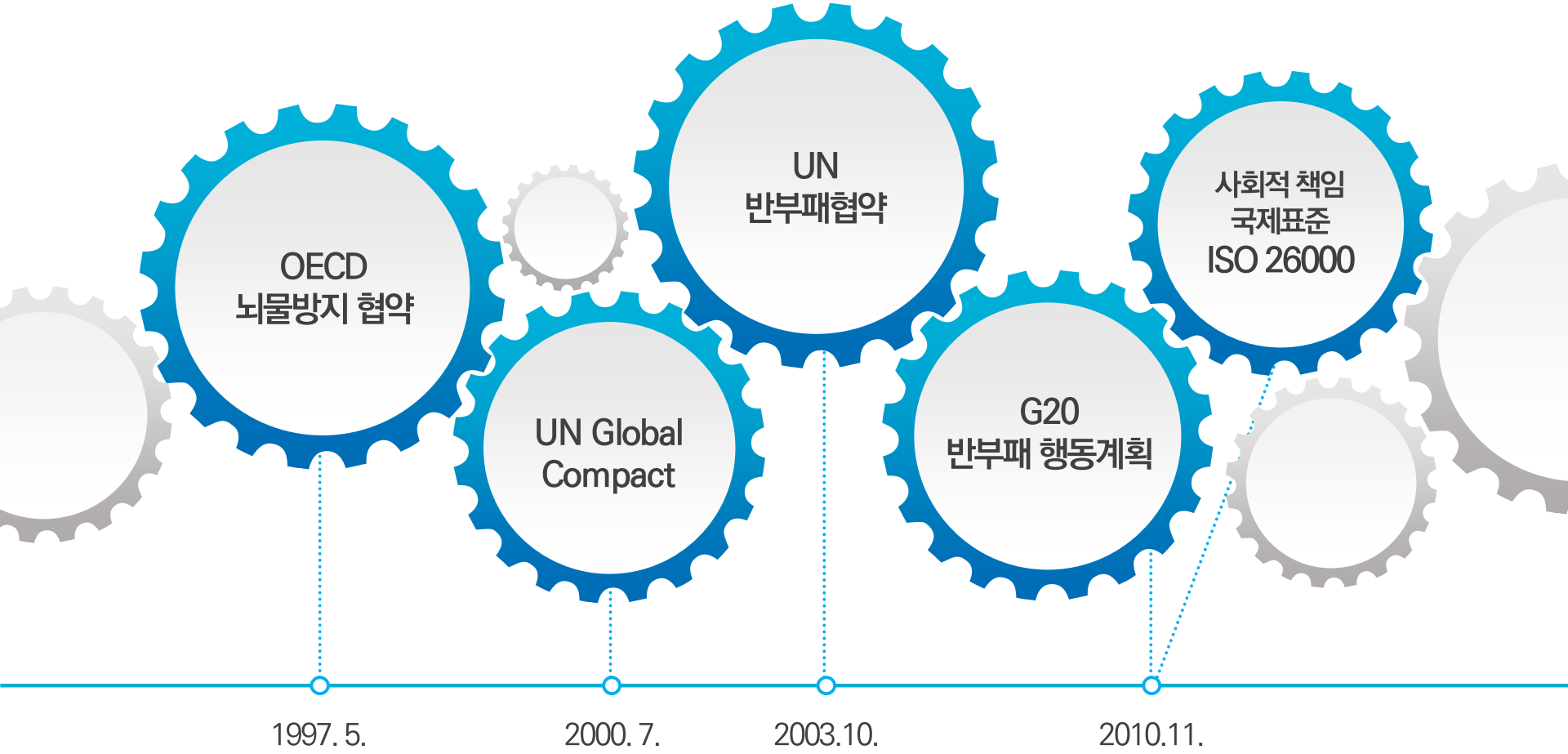
OECD
뇌물방지 협약
UN Global
Compact
UN
반부패협약
G20
반부패 행동계획
사회적 책임
국제표준
ISO 26000
1997. 5.
2000. 7.
2003.10.
2010.11.

# 청탁금지법 제정의의

## 공공기관에 대한 **국민 신뢰 확보**

우리 사회에 만연한
연고·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
**부정부패의 시작**

거액의 금품등을 수수 하더라도
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
**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**

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
**부정부패로 이어지는**
**연결고리 차단**

직무관련성·대가성 등이 없어도
**제재 가능토록 하여**
**국민 신뢰 회복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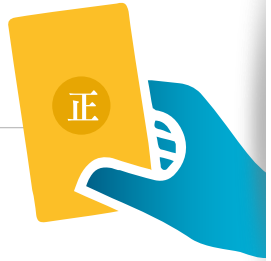

## 선의의 공직자등의 **보호**

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
금품등을 제공 받을 경우
**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**

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
간접적·우회적인 금품등 제공으로
**선의의 공직자등 피해**

신고 등 절차 준수시
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
**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**
**공정한 직무수행 담보**

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시
**신고·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**
**선의의 공직자등 보호**

# 법률 적용대상

## 적용 **대상기관**

- ✓ **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·도 교육청,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**
- ✓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**학교, 학교법인, 언론사**

## 적용 **대상자**

- ✓ **(공직자등) 국가·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,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**
- ✓ **공직자등의 배우자**
- ✓ **공무수행사인**
  ※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,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,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,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자
- ✓ 공직자등에게 **부정청탁**을 하거나 **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**

# 부정청탁의 금지

## 청탁금지법의 **핵심내용**

### 부정청탁의 금지

### 금품등 수수 금지

#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

**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**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

→ 법에 열거된 **14가지 대상직무**에 대하여 **법령을 위반**하게 하거나 **지위·권한을 남용**하게 하는 행위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2 | 3 | 4 | 5 |
| **인가·허가 등 직무** 처리 | **행정처분·형벌부과 감경·면제** | **채용·승진 등 인사** 개입 | 공공기관 **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·탈락**에 개입 | 공공기관 주관 **수상·포상 등 선정·탈락**에 개입 |
| 6 | 7 | | 8 | 9 |
| 입찰·경매 등에 관한 **직무상 비밀 누설** | **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·탈락**에 개입 | **법령 위반 + 지위·권한 남용** | 보조금 등의 **배정·지원, 투자 등**에 개입 | 공공기관이 **생산·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** |
| 10 | 11 | 12 | 13 | 14 |
| **학교 입학·성적 등** 업무 처리·조작 | **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** 업무 처리 |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**각종 평가·판정** 업무 개입 | **행정지도·단속 등 대상 선정·배제, 위법사항 묵인** | **사건의 수사·재판 등** 업무 처리 |

# 금지행위 **자세히 보기**

1. **인가·허가 등 직무 처리**
   인가·허가·면허·검정·시험·인증·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2. **행정처분·형벌부과 감경·면제**
 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, 조세, 부담금, 과태료, 과징금, 이행강제금,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·면제하도록 하는 행위
3. **채용·승진 등 인사 개입**
   채용·승진·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4. **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·탈락에 개입**
 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·의결·조정 위원회의 위원,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·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
5. **공공기관 주관 수상·포상 등 선정·탈락에 개입**
 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, 포상,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
6. **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**
   입찰·경매·개발·시험·특허·군사·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
7. **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·탈락에 개입**
 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
8. **보조금 등의 배정·지원, 투자 등에 개입**
   보조금·장려금·교부금·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에 배정·지원하거나 투자·예치·대여·출연·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
#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

9. **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**
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·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·교환·사용·수익·점유하도록 하는 행위

10. **학교 입학·성적 등 업무 처리·조작**
각급 학교의 입학·성적·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·조작하도록 하는 행위

11. **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**
징병검사, 부대 배속,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
12. **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업무 개입**
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

13. **행정지도·단속 등 대상 선정·배제, 위법사항 묵인**
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

14. **사건의 수사·재판 등 업무 처리**
사건의 수사·재판·심판·결정·조정·중재·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
15. **지위·권한 남용**
위 1호부터 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·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

#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

**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**를 위해 부정청탁 **예외사유를 7가지**로 규정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1<br>법령·기준에서 정한 절차·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| 2<br>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| 3<br>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| 7<br>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|
| 4<br>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| 5<br>직무·법률관계에 관한 확인·증명 등 신청·요구 | 6<br>질의·상담을 통한 법령·제도 등 설명·해석 요구 | |

# 예외사유 **자세히 보기**

1. **법령·기준에서 정한 절차·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**
   법령·기준에서 정하는 절차·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·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·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를 제안·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

2. **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**
 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

3. **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**
   선출직 공직자, 정당,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·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 또는 정책·사업·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·건의하는 행위

4. **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**
 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·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·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·문의 등을 하는 행위

5. **직무·법률관계에 관한 확인·증명 등 신청·요구**
 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·증명 등을 신청·요구하는 행위

6. **질의·상담을 통한 법령·제도 등 설명·해석 요구**
 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·제도·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

7. **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**
 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

# 부정청탁의 금지

##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

### 공직자등

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
**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**

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
**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**

※ 신고는 감독기관·감사원·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

### 소속기관장

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
**수사기관에 통보**

+

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
**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**

+

부정청탁 관련
**주요내용 기록·관리**

+

필요 시
**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**

### 조치사항

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

- 직무 참여 일시정지
- 직무 대리자의 지정
-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
- 사무분장의 변경
- 전보

#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시 제재

##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 (※위반행위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여 벌칙과 징계 병과)

| 위반행위 | | 제재수준 |
|---|---|---|
|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| | 제재 없음 |
|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| | 1천만원 이하 과태료 |
|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| 일반인 | 2천만원 이하 과태료 |
| | 공직자등 | 3천만원 이하 과태료 |
|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|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
#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1

## 이해당사자가 **직접**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

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○○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**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**을 하였는데,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**요건을 갖추지 못했다**는 것을 알면서도 C를 **직접 찾아가** 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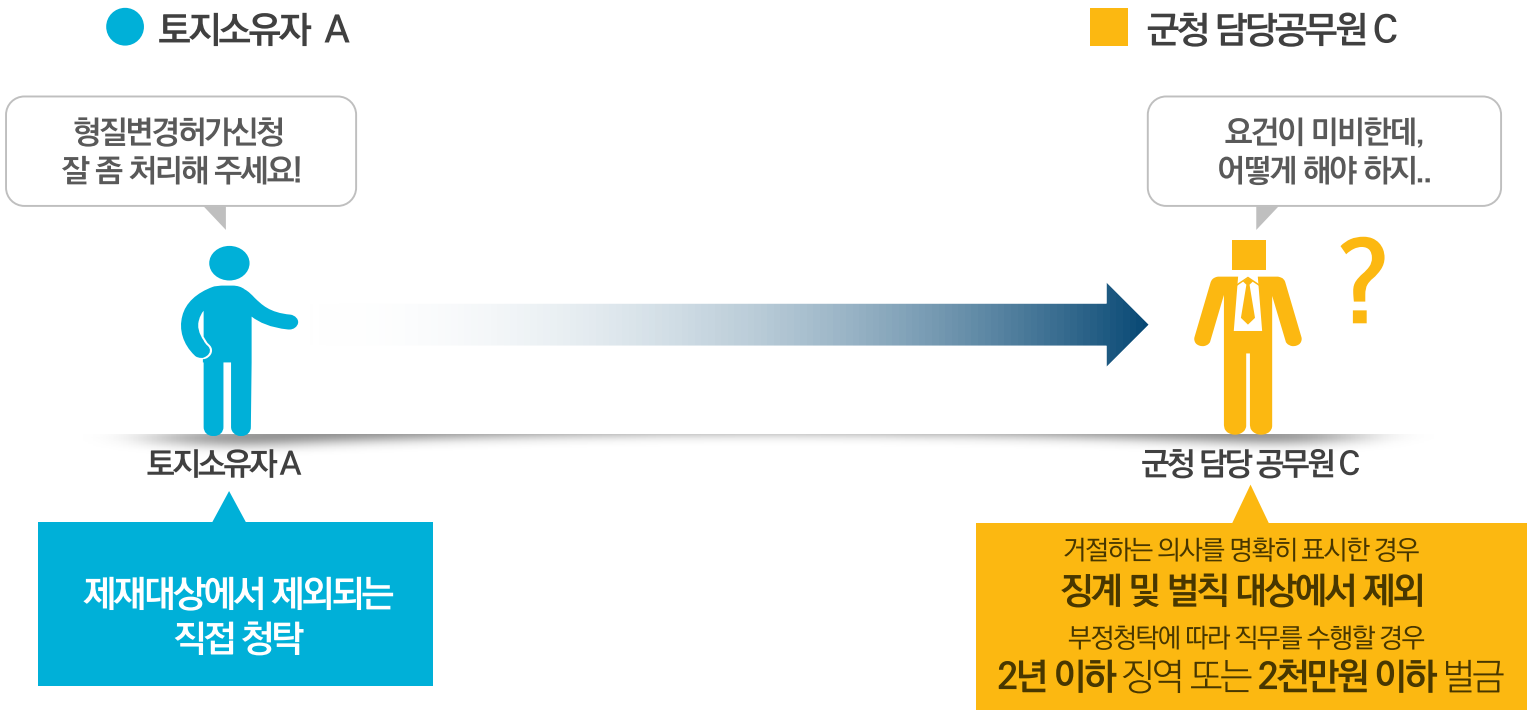

#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2

## 복수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

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○○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**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**을 하였는데,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**요건을 갖추지 못했다**는 것을 알고 자신의 **친구 B**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.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○○군청 **지방세 담당공무원 D**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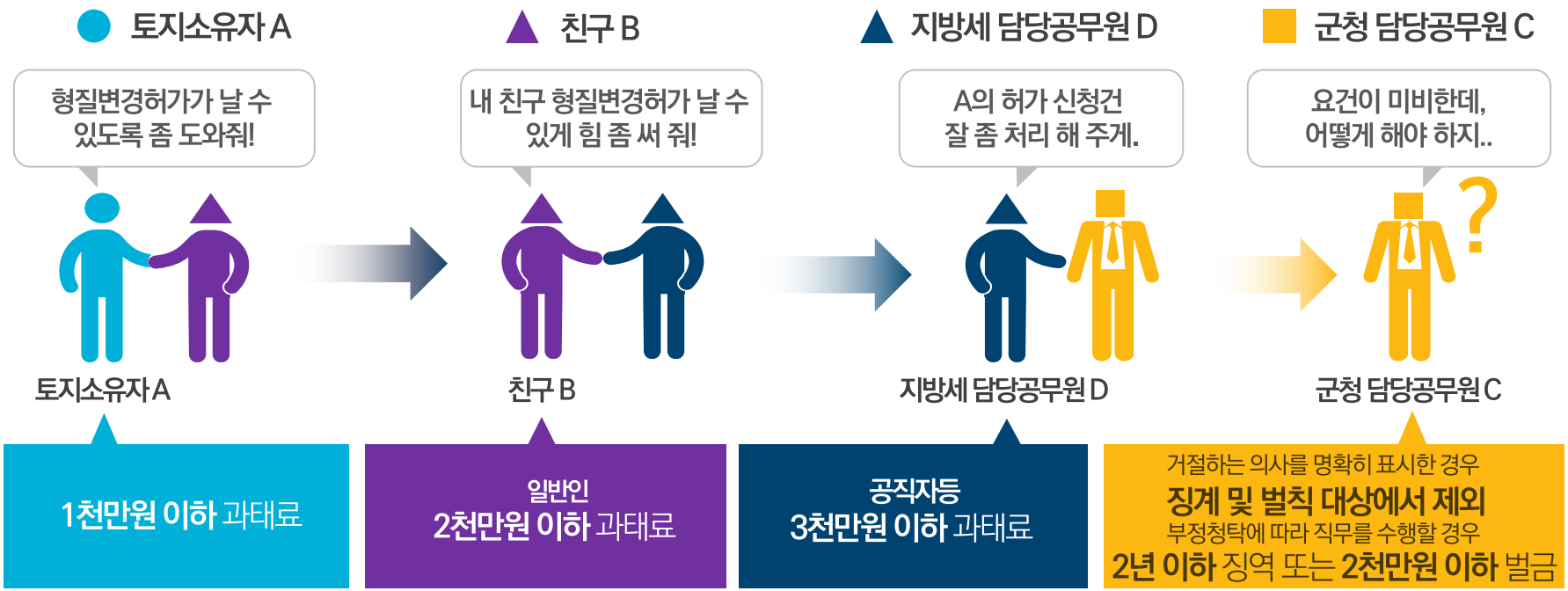

#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3

## 법인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

○○ 건설회사㈜ 소속 직원 A가 **건축 법령을 위반**하여 **건축허가를 내줄 것**을 △△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

**청탁금지법 제24조(양벌규정)에 따라 2천만원 이하** 과태료
**(다만, 상당한 주의·감독시 면책)**

제3자(법인)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
**2천만원 이하** 과태료

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
**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**
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
**2년 이하** 징역 또는 **2천만원 이하** 벌금

# 양벌규정

- 종업원 등이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**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·단체 또는 개인**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
- 다만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**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** 사업주 **면책**

**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·청렴 노력**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**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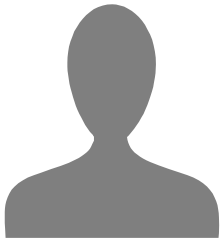

법인·단체의 대표자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

법인·단체 또는 개인

# 금품등 수수 금지

## 청탁금지법의 **핵심내용**

### 부정청탁의 금지

### 금품등 수수 금지

#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

##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**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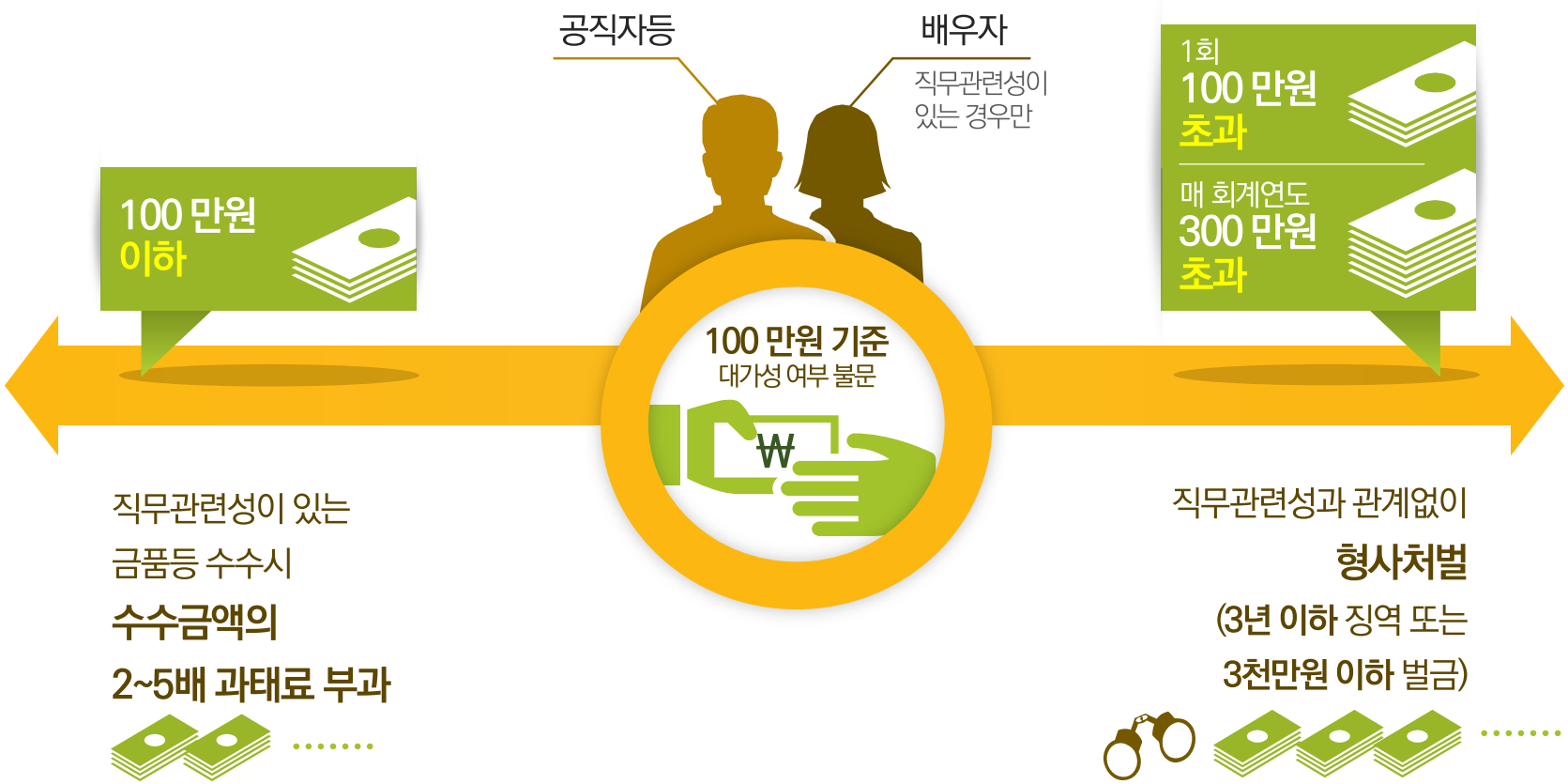


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(또는 그 배우자)에게 **제공한 자**도 **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**

# 금품등 수수 금지

## 수수 금지 금품등

### '금품등'의 정의

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**일체의 재산적 이익**

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**접대·향응**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**편의 제공**

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 부여 등 그 밖의 **유형·무형의 경제적 이익**

#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

##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

**1**

공공기관이
소속·파견 공직자등에게
지급하거나
상급 공직자등이
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
하급 공직자등에게
제공하는 금품등

**2**

원활한 직무수행,
사교·의례, 부조의
목적으로 제공되는
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

**3**

사적 거래(증여는 제외)로 인한
채무의 이행 등
정당한 권원(權原)에 의하여
제공되는 금품등

**4**

공직자등의
친족(민법 제777조)이
제공하는 금품등

※ 친족의 범위 : 8촌 이내 혈족,
4촌 이내 인척, 배우자

**5**

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
정하는 기준에 따라
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

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
맺고 있는 자가
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
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
**6**

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
공식적인 행사에서
주최자가 참석자에게
통상적인 범위에서
일률적으로 제공하는
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금품등

**7**

불특정 다수인에게
배포하기 위한
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

경연 ·추첨을 통하여 받는
보상 또는 상품 등

**8**

그 밖에
다른 법령·기준
또는
사회상규에 따라
허용되는 금품등

# 금품등 수수 금지

##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

### 공직자등

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
제공의 약속·의사표시를 받은 경우
(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)
**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**

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
**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**

받은 금품등이
멸실·부패·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
**소속기관장에게 인도**

※ 신고·인도는 감독기관·감사원·수사기관
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

### 소속기관장

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
**반환·인도 또는
거부 의사 표시 요구**

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
**수사기관에 통보**

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
**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**

### 조치사항

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

- 직무 참여 일시정지
- 직무 대리자의 지정
-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
- 사무분장의 변경
- 전보

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·인도한 경우 형사처벌 ·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

# 금품등 수수 금지

##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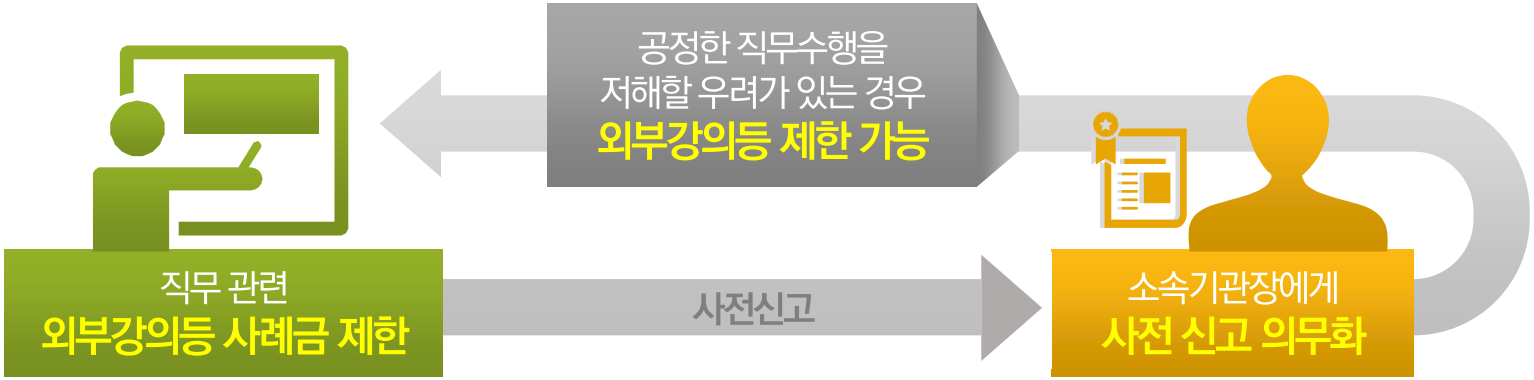


- **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**
  →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

- **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**
  → 기준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**신고**,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 없이 **반환**
  →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**

#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1

## 회계연도 관련 사례

○○시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A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**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** 상당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

(※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○○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음)

#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2

## 1회 관련 사례

○○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◇◇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**식사비용 60만원**을 계산하였고, 같은 날 A,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**술값으로 300만원**을 계산하였음

#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3

## 동일인 관련 사례

○○도 건축위원회에 ◇◇건설회사㈜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, 이에 ◇◇건설회사㈜ 소속 임원 B는 **70만원 상당의 양주**를, 소속 직원 C는 **30만원 상당의 상품권**을, 소속 직원 D는 **30만원 상당의 식사**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립대학교 교수 A에게 **각각 제공 또는 접대**를 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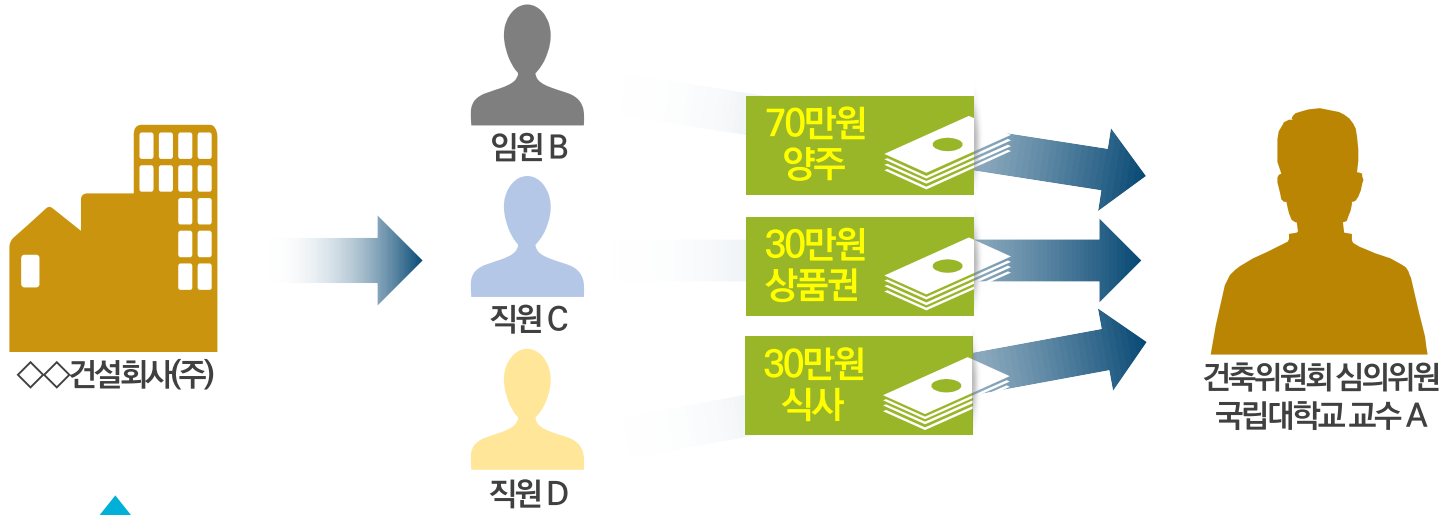


청탁금지법 제24조(양벌규정)에 따라
140만원 ~ 350만원 과태료
+ 60만원 ~ 150만원 과태료
+ 60만원 ~ 150만원 과태료

B : 140만원 ~ 350만원 과태료
C : 60만원 ~ 150만원 과태료
D : 60만원 ~ 150만원 과태료

3년 이하 징역 또는
3천만원 이하 벌금

#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4

## 배우자 금품등 수수 사례

○○시 문화정책과장 A의 배우자 C가 남편의 고교 동창이며 ○○**시에서 문화창작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** 오페라 감독 B로부터 **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**을 받은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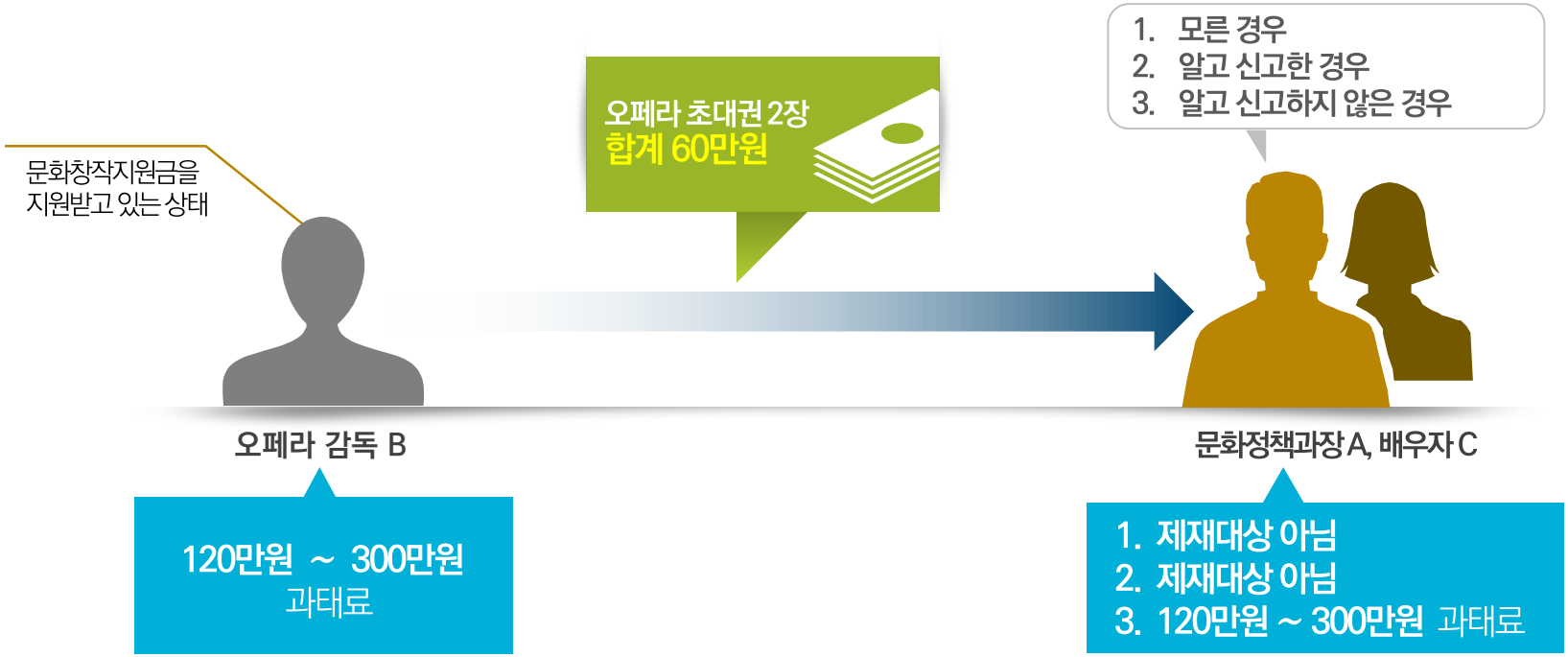

# 위반행위 신고·처리

##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**신고·처리 과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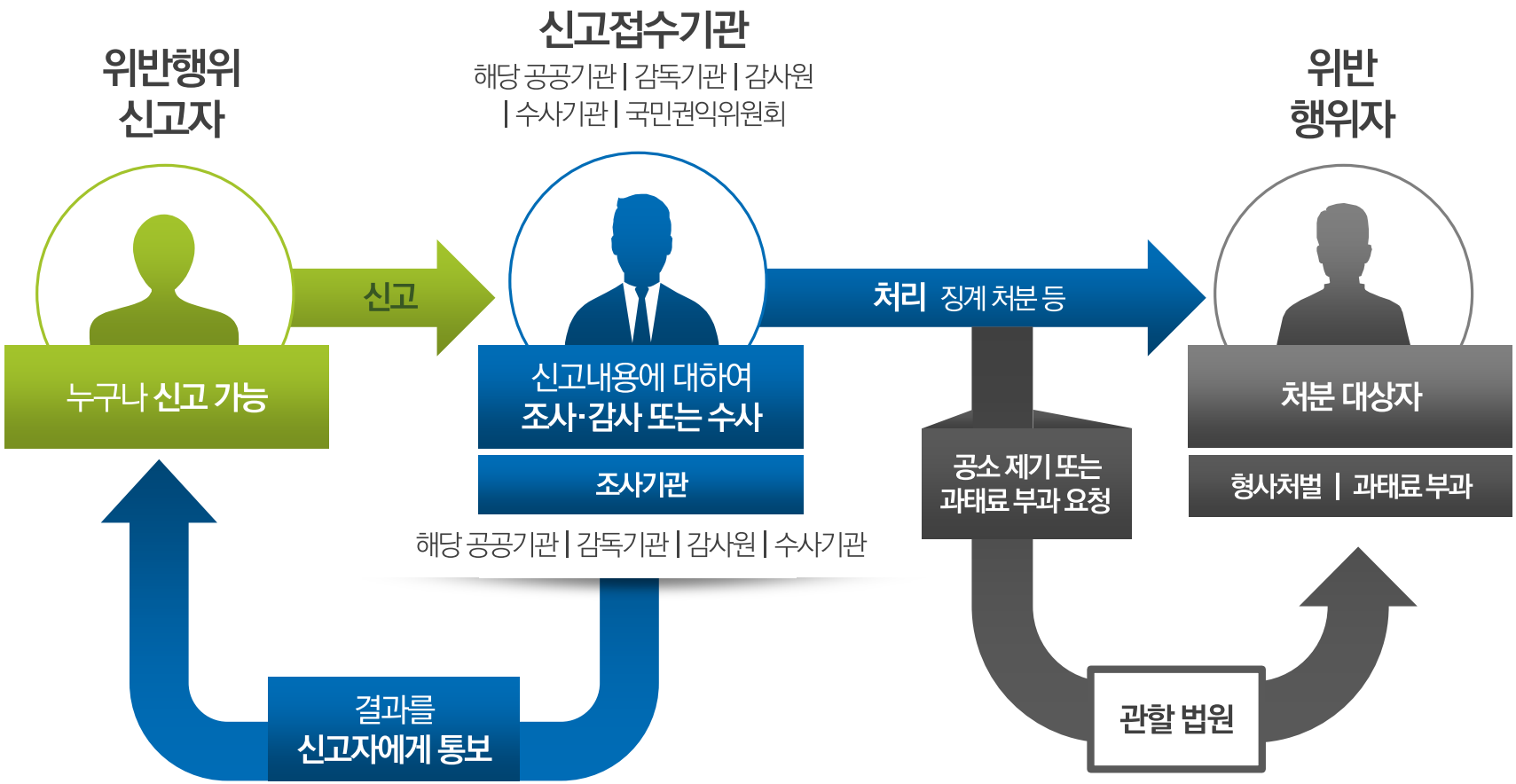

# 신고자 보호·보상

## 신고자에 대한 **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**

### 신고자 보호

- 신고자 비밀 보장
- 불이익조치 금지
- 신고자 신변보호
- 신고자 책임감면

### 신고자 보상

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·손실 방지, **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** ▶ **포상금 지급 가능**

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·증대, **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** ▶ **신고자의 신청** ▶ **보상금 지급**

**공익신고자 보호법** 준용

**부패방지권익위법** 준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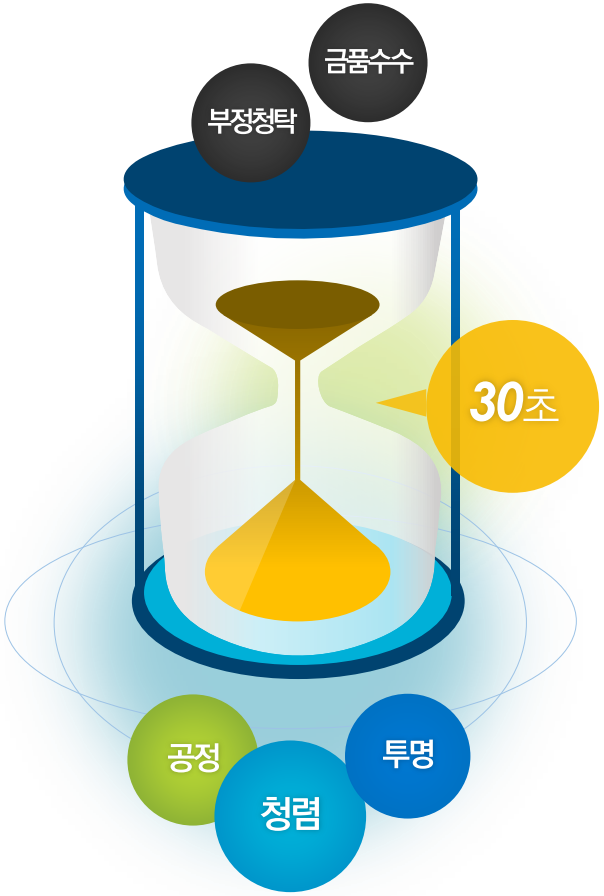


누구도
부정청탁·금품수수의 유혹에서
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

주기전 **30**초,
받기전 **30**초.

30초의 생각이
**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**

국민권익위원회
Anti-Corruption &
Civil Rights Commission